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2. 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 4. 18일 속초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1992년 4월 23일

다. 상정일자 제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1992. 4월 27일 (상정, 개요설명, 질의)

제2차 위원회 1992년 4월 28일 (질의, 심사보고서 작성,
심사보고 및 의결)

2. 제안 설명 의 요 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가. 제안이유 1992년도 속초시 재정운영의 기본이 되는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0,379,27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59,182,403천원 보다 11,196,872천원 증액

○ 일반회계 39,963,227천원

○ 특별회계 30,416,048천원

○ 특별회계 및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회 계 명	예 산 액
상 수 도	13,452,000	저소득생활안정기금	186,336
공 영 개 발	5,155,648	하 수 도	747,174
주 택	3,491,662	농공지구 조성	936,997
의료보호기금	698,517	공유림 관리	846,830
새마을 소득	140,924	지방 양여금	4,742,462
새마을소득 금고	17,49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택구)

○ 검토보고서 별 첨

4. 수정안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2년 4월 28일 한영환 의원외 3인

나. 수정 이유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 및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편성을 기하고자 증액 및 삭감

다. 주요 골자

별 첨

5. 심사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 (11명 전원 찬성)

6.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7. 첨부서류

가. 예산총칙

나.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1992. 4. 27

— '92年度 一般會計 特別會計 —
第1回 追加更正 歳入歳出 豫算案

檢 討 報 告 書

東 草 市 議 會 專 門 委 員

'92年度 第1回 追加更正 歳入歳出 豫算案

1. 現況

가.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歳入歳出 總括

구 분		'92 1회 추경	구 성	'92 예산액	구 성	증 감
합 계		70,379,275	100 %	59,182,403	100 %	11, 196,872
세입	지 방 세	8,160,300	12 %	8,050,300	14 %	110,000
	세 외 수 입	46,138,178	66 %	36,910,299	62 %	9,227,879
	경상적 세외수입	11,875,474	17 %	10,794,140	18 %	1,081,334
	임시적 세외수입	34,262,704	49 %	26,116,159	44 %	8,146,545
	지 방 교 부 세	9,734,000	14 %	9,134,000	15 %	600,000
	지 방 양 여 세	2,763,176	4 %	2,763,176	5 %	0
	보 조 금	3,583,621	5 %	2,324,628	4 %	1,258,993
	국 고 보 조 금	2,190,448	3 %	1,558,382	3 %	632,066
	도 비 보 조 금	1,393,173	2 %	766,246	1 %	626,927
	기 본 경 상 비	15,172,611	22 %	14,357,022	24 %	815,589
세출	인 건 비	7,573,515	11 %	7,439,351	13 %	134,164
	관 서 운 영 비	2,914,408	4 %	2,868,122	5 %	46,286
	기 본 경 상 비	4,684,688	7 %	4,049,549	7 %	635,139
	사 업 비	46,893,903	67 %	37,941,875	64 %	8,952,028
	경 상 사 업 비	4,959,167	7 %	3,715,400	6 %	1,243,767
	주 요 사 업 비	41,934,736	60 %	34,226,475	58 %	7,708,261
	기 타 경 비	8,312,761	12 %	6,883,506	12 %	1,429,255

○ 一般會計 歲入歲出

구 분		'92 1회 추경	구 성	'92 예산액	구 성	증 감
합 계		39,963,227	100 %	31,843,987	100 %	8,119,240
세	지 방 세	8,160,300	20 %	8,050,300	25 %	110,000
	세 외 수 입	19,584,062	49 %	13,184,025	41 %	6,400,037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955,220	10 %	3,009,584	9 %	945,636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5,628,842	39 %	10,174,441	32 %	5,454,401
	지 방 교 부 세	9,734,000	24 %	9,134,000	29 %	600,000
	지 방 양 여 세	0				
입	보 조 금	2,484,865	6 %	1,475,662	5 %	1,009,203
	국 고 보 조 금	1,520,713	4 %	1,095,718	3 %	424,955
	도 비 보 조 금	964,152	2 %	379,944	1 %	584,208
	기 본 경 상 비	13,109,242	33 %	12,423,470	39 %	685,772
세	인 건 비	6,864,139	17 %	6,739,892	21 %	124,247
	관 서 운 영 비	2,678,524	7 %	2,648,163	8 %	30,361
	기 본 경 상 비	3,566,579	9 %	3,035,415	10 %	531,164
	사 업 비	23,838,027	60 %	16,480,321	52 %	7,357,706
	경 상 사 업 비	3,543,751	9 %	2,596,090	8 %	947,661
	주 요 사 업 비	20,294,276	51 %	13,884,231	44 %	6,410,045
	기 타 경 비	3,015,958	8 %	2,940,196	9 %	75,762
출						

○ 特別會計 歲入歲出

구 분		'92 1회 추경	구 성	'92 예산액	구 성	증 감
합 계		30,416,048	100 %	27,338,416	100 %	3,077,632
세	지 방 세	0		0		
	세 외 수 입	26,554,116	87 %	23,726,274	87 %	2,827,842
	경상적 세외수입	7,920,254	26 %	7,784,556	28 %	135,698
	임시적 세외수입	18,633,862	61 %	15,941,718	58 %	2,692,144
	지 방 교 부 세	0				
입	지 방 양 여 세	2,763,176		2,763,176		0
	보 조 금	1,098,756	4 %	848,966	3 %	249,790
	국 고 보 조 금	669,735	2 %	462,664	2 %	207,071
	도 비 보 조 금	429,021	1 %	386,302	1 %	42,719
	기 본 경 상 비	2,063,369	7 %	1,933,552	7 %	129,817
세	인 건 비	709,376	2 %	699,459	3 %	9,917
	관 서 운 영 비	235,884	1 %	219,959	1 %	15,925
	기 본 경 상 비	1,118,109	4 %	1,014,134	4 %	103,975
	사 업 비	23,055,876	76 %	21,461,554	79 %	1,594,322
	경 상 사 업 비	1,415,416	5 %	1,119,310	4 %	296,106
출	주 요 사 업 비	21,640,460	71 %	20,342,244	74 %	1,298,216
	기 타 경 비	5,296,803	17 %	3,943,310	14 %	1,353,493

2. 檢 討 意 見

가.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

1) 一般會計 歲入

- 一般會計 '92 當初豫算은 31,843,987千원 보다 8,119,240千원이 增額된 39,963,227千원으로 이를 稅目별로 살펴보면,
- 地方稅 普通稅는 當初豫算 보다 110,000千원이 增額된 바 이는 '92. 1. 1 부터 稅率 上昇 및 '91년도 徵收額을 基準하여 算定한 바 年內徵收는 可能할 것으로 보며,
- 稅外收入은 6,400,037千원 增額中 臨時的 稅外收入인 財産賣却代 1,008,000千원 '91年度 순세계 剩餘金 4,346,401 千원이 包含되었으며,
- 其外 地方交附稅 600,000千원, 補助金 1,009,203千원이 編成되어 있습니다.

2) 特別會計 歲入

- 特別會計 '92 當初豫算은 上水道事業 特別會計 外 11個 特別會計로 이를 會計別로 살펴보면,

- 공기업인 上水道 特別會計는 '92年度 當初豫算額 12,285,000千원 보다 1,167,000千원이 增額된 13,452,000千원인 바, 이를 稅目別로 살펴보면 定期豫金 利子收入은 554,000千원, 土地管理 및 地域均衡開發 基金 260,000千원, 移越金 및 未收金 353,000千원이 歲入豫算에 計上하였으며,
- 公營開發 公企業 特別會計는 '92 當初豫算 5,075,199千원 보다 80,449千원이 增額된 5,155,648千원이며,
- 其外 住宅事業 特別會計 外 8個 特別會計는 3,077,632千원이 增額된 30,416,048千원으로 豫算 編成되었습니다.

나.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出

1) 一般會計 歲出

- '92년도 第1回 追加更正 歲出 豫算은 當初 豫算額에 8,119,240 원이 增額 編成되었으며, 이를 稅目別로 살펴보면,
議會費는 人件費 1,836千원과 行政裝備 現代化로 컴퓨터 等 購入費 2,398千원, 議會運營 活性化를 爲하여 基本輕常費 3,968千원이 計上되었으며

- 一般行政費中 企劃管理費 內譯을 살펴보면, 一般行政費中 企劃管理費, 公報管理費目에 住民啓導用 新聞 購讀料 4,380千원이 計上되었는바 이는 地方紙 普及 의 一還으로 當初 豫算 審議시 舉論되었던 바 檢討가 要求되며 內務行政費 民願業務 基本輕常費는 當初 豫算보다 95,172千원이 增額 編成된 바 이는 쾌적한 民願室 環境 雰圍氣 造成을 爲하여 適切히 豫算編成 된 것으로 보이며, 市郡區 行政運營費中 輕常事業費에 바르게 살기 運動協議會 補助金 48,600千원이 신규 編成한 것은 정액 補助團體로 指定되어 豫算編成 되었으나, 이는 年額으로 計算된 것으로 보이므로 補助團體로 指定되기 以前의 事業費는 削減함이 妥當할 것으로 보이며,
- 社會福祉費는 582,968千원이 計上된 바 低所得者를 爲하여 持續적으로 支援하므로써 階層間 葛藤 및 不滿要因을 解消하여 生活 環境의 改善에 投資하여 一體感을 造成하기 爲하여 編成된 것으로 思料되며,
- 産業經濟費 357,297千원 增額分은 U R 對策 및 農業 基盤造成 水産振興에 重點 投資된 바, 農漁民 生活 安定을 爲하여 適切히 豫算編成 되었으며,

○ 地域開發事業費는 5,544,474千원이 增額 編成된 바 地域間의 開發 隔差를 縮小하기 爲한 地域開發 事業에 投資하였으며,

○ 文化 및 體育費는 140,776千원이 增額 編成, 그중 低所得 階層을 爲한 文化館 小講堂, 禮式場 施設費 26,733千원은 低所得者를 爲한 事業으로 보며,

. 民防衛費는 地域安定과 消防行政의 圓滑을 기하는데 投資되었습니다.

2) 特別會計 歲出

○ 上水道 公企業 特別會計는 追更 總豫算 規模는 13,452,000千원으로 運營費用中 人件費 1,341千원은 當初豫算에 未編成分이며, 基本輕常費중 上水道 保護區域 圖面 製作 및 測量費 17,000千원은 必要性 檢討가 요구되며, 其他 人件費, 輕常費 및 投資事業費는 給水對策에 適切히 投資 되었으며,

○ 公營開發事業費는 80,449千원이 增額 編成된 바 業務管理費 中 用役費 158,000千원은 事業 展望 등이 分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산 총 칙

1조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할수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 세출 예산총액	일시 차입 한도액	비 고
합 계		70,379,275	2,111,371	
일 반 회 계		39,963,227	1,198,896	
특 별 회 계		30,416,048	912,475	
공 기 업	계	18,607,648	558,229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3,452,000	403,560	
	공 영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	5,155,648	154,669	
기 타 특 별 회 계	계	11,808,400	354,246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491,662	104,749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698,517	20,955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특별회계	140,924	4,227	
	새마을 소득 금고 특 별 회 계	17,498	524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186,336	5,590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747,174	22,415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 별 회 계	936,997	28,109	
	공 유 림 관 리 특 별 회 계	846,830	25,404	
	지 방 양 여 금 특 별 회 계	4,742,462	142,273	

제 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조 1992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100백만원으로 한다.

제 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4,677천원,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239,327천원,
공영개발사업회계 예비비는 3,000천원으로 한다.